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가입 후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 특약

2. 계약전환에 관한 사항

가. 계약전환 관련 용어의 정의

- 1) 전환 전 계약: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간편심사형 계약을 말한다.
- 2) 전환 후 계약: “전환 전 계약”에 대하여 약관 제7조(계약전환의 적용) 제1항에 따라 계약전환이 이루어진 경우의 계약을 말한다.
- 3) 계약전환 신청 가능 기간: 계약자가 이 특약에 따라 회사에 계약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최초 계약체결 시 가입한 간편심사형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최초계약	계약전환 신청 가능 기간
간편심사형(305)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날 이전까지
간편심사형(315)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날 이전까지
간편심사형(325)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날 이전까지
간편심사형(335)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이전까지
간편심사형(345)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날 이전까지
간편심사형(355)	해당 없음

- 4) 특정질병: 최초 보험계약 시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진단, 입원 또는 수술 여부를 질문한 질병을 말한다.

나. 계약전환 시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전환을 신청할 때 “계약전환 시 알릴의무 사항”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다. 계약전환 시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나.’항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계약전환을 무효로 하며 “전환 전 계약” 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라. 계약전환의 적용대상

- (1) “전환 전 계약” 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계약전환의 대상으로 한다.
 - 1) 전환 신청 시 연체된 보험료가 없는 유효한 계약
 - 2) 피보험자의 무사고 기간이 변경되어 위험이 감소된 계약
 - 3) 해당계약의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간편심사형(355)’ 유형이 아닌 계약
- (2) ‘(1)’ 의 ‘2)’ “무사고” 라 함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최초 보험계약일(갱신형의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도 최초 보험계약일(갱신형의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로 합니다. 이하 “최초 보험계약일” 이라 한다) 이후에 질병 및 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지 않은 경우
 - 2) 최초 보험계약일 이후에 “특정질병” 으로 진단받지 않은 경우
- (3) ‘(1)’ 의 ‘2)’ “무사고 기간” 이라 함은 최초 보험계약일로부터 제2항에서 정한 “무사고” 상태가 계속하여 유지되는 기간을 말한다. “무사고 기간” 의 산정은 최초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한다) 전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마. 계약전환의 안내

- (1) 회사는 계약전환 신청 가능 기간 종료일 전까지 매년 1회 이상 계약자에게 관련 내용(계약전환 요건 및 계약전환 절차 등)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 (2) ‘(1)’ 항에도 불구하고, ‘라.’ 의 ‘(1)’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계약에 대하여는 관련 안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3) 계약전환 신청 가능 기간 동안 계약자의 계약전환 신청이 없는 경우(계약자와의 연락두절로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전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바. 계약전환의 적용

- (1) 계약자는 계약전환 신청 가능 기간 동안 회사에 계약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라.’ 의 ‘(1)’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전환을 승낙 또는 거절할 수 있다. 회사가 계약전환을 승낙할 경우 “전환 후 계약” 으로 계약

을 전환하며, 회사가 계약전환을 거절할 경우에는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 (2) ‘(1)’ 에 따라 계약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전환 후 계약” 은 최초 계약 시 가입한 간편심사형의 유형 및 “무사고 기간” 에 따라 아래 표에 따른 유형의 간편심사형 계약을 적용한다.

최초계약 체결시	최초계약				
	무사고기간 (1년)	무사고기간 (2년)	무사고기간 (3년)	무사고기간 (4년)	무사고기간 (5년)
간편심사형 (305)	간편심사형 (315)	간편심사형 (325)	간편심사형 (335)	간편심사형 (345)	간편심사형 (355)
간편심사형 (315)	간편심사형 (325)	간편심사형 (335)	간편심사형 (345)	간편심사형(355)	
간편심사형 (325)	간편심사형 (335)	간편심사형 (345)	간편심사형(355)		
간편심사형 (335)	간편심사형 (345)	간편심사형(355)			
간편심사형 (345)	간편심사형(355)				계약전환 불가
간편심사형 (355)	계약전환 불가				

- (3) ‘(1)’ 항에 따라 계약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전환 후 계약” 의 보험기간은 “전환 전 계약” 의 잔여보험기간과 동일하다.
- (4) ‘(1)’ 항에 따라 계약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전환 후 계약” 은 아래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전환 전 계약” 과 동일한 내용으로 전환된다.
- 1) 보장내용
 - 2) 갱신/비갱신 유형
 - 3) 해약환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기본형/해약환급금 미지급형)
 - 4) 간편심사 유형 변경을 제외한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3. 기타 사항

가. 약관 제7조(계약전환의 적용) 제1항에 따라 계약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계약전환 승낙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험료를 변경하여 적용하며, “전환 전 계약” 의 계약자적립액과 “전환 후 계약” 의 계약자적립액의 차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하 ‘정산차액’ 이라 한다)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나. 약관 제4조(계약전환 시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에 따라 계약전환이 무효가 된

경우 계약자는 지급된 정산차액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전환 전 계약”의 유지를 위하여 전환전 보험료와 전환후 보험료의 차액(이하 ‘증액보험료’라 한다.)의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이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 ‘나’에 따른 증액보험료 추가납입 또는 정산차액 반환이 연체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해당 금액을 보험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라. 약관 제7조(계약전환의 적용) 제1항에 따른 계약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계약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마. ‘라’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 계약”에서 해당계약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계약은 계약전환이 불가능하며, 세부보장으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소멸사유가 발생한 세부보장은 계약전환이 불가능하다. “전환 전 계약”에서 해당계약이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전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계약 전체에 대한 계약전환을 무효로 하며, 회사는 효력이 없어진 이후 납입한 해당계약의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반환한다.

바. 최초계약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사기에 의한 계약’ 조항은 “전환 후 계약”에서도 효력이 계속된다.

사. 회사는 이 특약의 부가 가능한 상품으로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가입 후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별첨1에 따른 별도의 확인서를 받는다.

아. 기타 사항은 주계약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첨1]

가입 후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

1. 이 상품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계약의 계약자가 계약전환을 신청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부합하는 유형으로 계약을 전환 할 수 있는 ‘가입 후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을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 1) 전환 신청 시 연체된 보험료가 없는 유효한 계약
- 2) 피보험자의 무사고 기간이 변경되어 위험이 감소된 계약
- 3) 해당계약의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간편심사형(355)’ 유형이 아닌 계약

[간편심사 유형별 보험료 예시]

○ 이 상품은 일반심사보험 대비 보험료가 할증 되어 있으며, “간편심사” 유형에 따라 할증 수준이 다릅니다. 보험료 수준은 할증 폭이 가장 큰 간편심사형(305)에서 간편심사형(355) 순으로 저렴해집니다.

기준 : 계약사항에 해당하는 보험료 합계 예시(단위:원)

구분	간편심사형 (305)	간편심사형 (315)	간편심사형 (325)	간편심사형 (335)	간편심사형 (345)	간편심사형 (355)
보험료합계	xxx	xxx	xxx	xxx	xxx	xxx

[“무사고” 및 “무사고 기간”의 정의]

1) “무사고”라 함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최초 보험계약일(갱신형의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도 최초 보험계약일(갱신형의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로 합니다. 이하 “최초 보험계약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질병 및 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지 않은 경우

② 최초 보험계약일 이후에 “특정질병”으로 진단받지 않은 경우

※ 특정질병: 최초 보험계약 시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진단, 입원 또는 수술 여부를 질문한 질병을 말합니다.

2) “무사고 기간”이라 함은 최초 보험계약일로부터 ‘1)’에서 정한 “무사고”상태가 계속하여 유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무사고 기간”의 산정은 최초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전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2. 계약자는 계약전환 신청 가능 기간 동안 회사에 계약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계약전환을 승낙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전환을 승낙할 경우 “전환 후 계약”으로 계약을 전환하며, 회사가 계약전환을 거절할 경우에는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3. 계약전환 신청은 보험계약일(갱신형의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가능하며, 계약전환 신청 가능 기간은 최초 계약체결 시 가입한 간편심사형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최초계약	계약전환 신청 가능 기간
간편심사형(305)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날 이전까지
간편심사형(315)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날 이전까지
간편심사형(325)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날 이전까지
간편심사형(335)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이전까지
간편심사형(345)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날 이전까지
간편심사형(355)	계약전환 불가

4. 계약전환 신청 가능 기간 동안 계약자의 계약전환 신청이 없는 경우(계약자와의 연락두절로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계약전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5. 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전환 후 계약”은 최초 계약 시 가입한 간편심사형의 유형 및 무사고 기간에 따라 아래표에 따른 유형의 간편심사형 계약을 적용합니다.

최초계약 체결시	최초계약				
	무사고기간 (1년)	무사고기간 (2년)	무사고기간 (3년)	무사고기간 (4년)	무사고기간 (5년)
간편심사형 (305)	간편심사형 (315)	간편심사형 (325)	간편심사형 (335)	간편심사형 (345)	간편심사형 (355)
간편심사형 (315)	간편심사형 (325)	간편심사형 (335)	간편심사형 (345)	간편심사형(355)	
간편심사형 (325)	간편심사형 (335)	간편심사형 (345)	간편심사형(355)		
간편심사형 (335)	간편심사형 (345)	간편심사형(355)			
간편심사형 (345)	간편심사형(355)				계약전환 불가
간편심사형 (355)	계약전환 불가				

6. 계약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전환 후 계약”의 보험기간은 “전환 전 계약”의 잔여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7. 계약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전환 후 계약”은 아래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전환 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전환됩니다.

- 1) 보장내용
 - 2) 갱신/비갱신 유형
 - 3) 해약환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기본형/해약환급금 미지급형)
 - 4) 간편심사 유형 변경을 제외한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8. 회사는 계약전환 승낙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험료를 변경하여 적용하며, “전환 전 계약”의 계약자적립액과 “전환 후 계약”의 계약자적립액의 차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하 ‘정산차액’이라 합니다)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9. 약관 제4조(계약전환 시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에 따라 계약전환이 무효가 된 경우 계약자는 지급된 정산차액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전환 전 계약”의 유지를 위하여 전환전 보험료와 전환후 보험료의 차액(이하 ‘증액보험료’라 합니다.)의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이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10. ‘9’에 따른 증액보험료 추가납입 또는 정산차액 반환이 연체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해당 금액을 보험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1. 약관 제7조(계약전환의 적용) 제1항에 따른 계약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계약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1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 계약”에서 해당계약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계약은 계약전환이 불가능하며, 세부보장으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소멸사유가 발생한 세부보장은 계약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전환 전 계약”에서 해당계약이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전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계약 전체에 대한 계약전환을 무효로 하며, 회사는 효력이 없어진 이후 납입한 해당계약의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반환합니다.

※ 최초계약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사기에 의한 계약’ 조항은 “전환 후 계약”에서도 효력이 계속됩니다.

※ 아래 옅고 크게 밑줄친 내용에 계약자가 직접 자필[전자적 형태의 확인 방식(키보드 타건 또는 음성 인식을 통한 Key-in 입력방식 등) 포함]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_____은(는) 보험설계사 _____(으)로부터 위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은 신청 가능 기간 동안 신청한 계약자에 한해서 회사의 승낙으로 적용됩니다.

상기 가입 후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특약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모집자 확인]

보험설계사 _____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 _____에게 설명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보험설계사 (인/서명)

[계약자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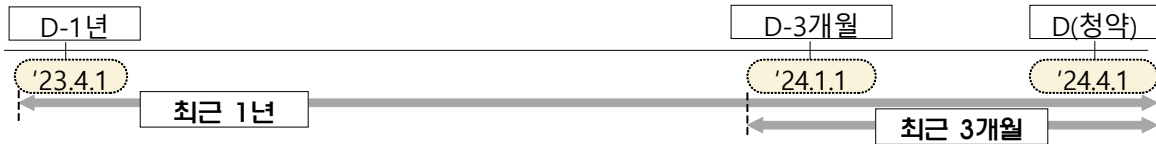
보험설계사 _____(으)로 부터 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20 년 월 일 계약자 (인/서명)

[별첨2-1]

계약전환 시 알릴 의무 사항

- ※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계약자의 전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가 전환요건을 확인하고 심사 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아래 질문들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직접 작성하기 바랍니다.
- ※ 만약 아래 질문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전환이 거절될 수 있으며, 추후 계약전환이 적용 된 후에 회사가 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전환 후 계약” 은 무효로 하며, “전환 전 계약” 이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 위 사항으로 “전환 전 계약” 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증액보험료의 추가납입 및 정산차액의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증액보험료의 추가납입 및 정산차액의 반환 등이 연체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해당 금액을 보험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 이 청약서에서 ‘최근 ○개월 이내(◆년 이내)’ 는 청약일의 ○개월 전일(◆년 전일)부터 청약일 까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일이 4월 1일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는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현재 및 과거의 질병

1. 최초 계약 체결 이후 1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 포함)
 2. 최초 계약 체결 이후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아래의 질병으로 “진단” 받거나 “ 입원 또는 수술” 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1) 암 2) 협심증 3) 심근경색 4) 뇌졸중증
 - 5) 간경화증 6) 심장판막증 7) 투석중인 만성신장질환
- ※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 혈액종양이 포함됩니다.

보험설계사는 계약전환 시 알릴의무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으므로 과거의 진단 또는 치료사실 등 중요한 내용을 구두로만 알릴 경우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전환 후 계약” 이 무효되며 해당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증액보험료의 추가납입 및 정산차액의 반환 등이 연체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차감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_____은(는) 보험설계사 _____(으)로부터 계약전환 시 알릴의무 위반시의 효과(전환후 계약의 무효, 증액보험료의 추가납입 및 정산차액의 반환, 연체시 보험금의 차감)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계약전환 시 알릴의무 사항에 대해 신청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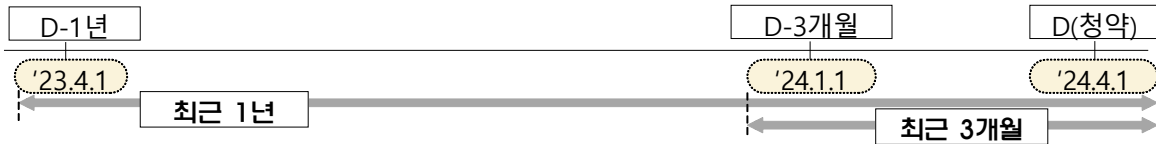
계약자 성명 : (인/서명)

피보험자 성명 : (인/서명)

[별첨2-2]

계약전환 시 알릴 의무 사항

- ※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계약자의 전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가 전환요건을 확인하고 심사 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아래 질문들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직접 작성하기 바랍니다.
- ※ 만약 아래 질문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전환이 거절될 수 있으며, 추후 계약전환이 적용 된 후에 회사가 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전환 후 계약” 은 무효로 하며, “전환 전 계약” 이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 위 사항으로 “전환 전 계약” 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증액보험료의 추가납입 및 정산차액의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증액보험료의 추가납입 및 정산차액의 반환 등이 연체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해당 금액을 보험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 이 청약서에서 ‘최근 ○개월 이내(◆년 이내)’ 는 청약일의 ○개월 전일(◆년 전일)부터 청약일 까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일이 4월 1일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는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현재 및 과거의 질병

1. 최초 계약 체결 이후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 포함)
 2. 최초 계약 체결 이후 2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아래의 질병으로 “진단” 받거나 “ 입원 또는 수술” 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1) 암 2) 협심증 3) 심근경색 4) 뇌졸중증
 - 5) 간경화증 6) 심장판막증 7) 투석중인 만성신장질환
- ※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 혈액종양이 포함됩니다.

보험설계사는 계약전환 시 알릴의무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으므로 과거의 진단 또는 치료사실 등 중요한 내용을 구두로만 알릴 경우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전환 후 계약” 이 무효되며 해당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증액보험료의 추가납입 및 정산차액의 반환 등이 연체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차감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_____은(는) 보험설계사 _____(으)로부터 계약전환 시 알릴의무 위반시의 효과(전환후 계약의 무효, 증액보험료의 추가납입 및 정산차액의 반환, 연체시 보험금의 차감)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계약전환 시 알릴의무 사항에 대해 신청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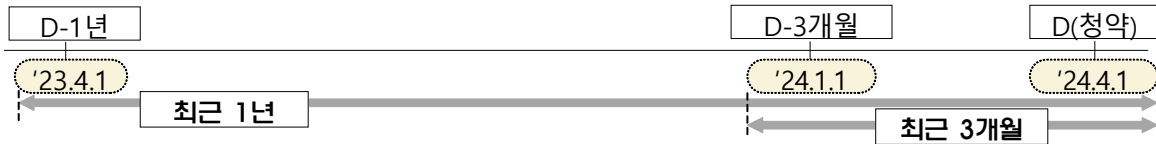
계약자 성명 : (인/서명)

피보험자 성명 : (인/서명)

[별첨2-3]

계약전환 시 알릴 의무 사항

- ※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계약자의 전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가 전환요건을 확인하고 심사 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아래 질문들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직접 작성하기 바랍니다.
- ※ 만약 아래 질문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전환이 거절될 수 있으며, 추후 계약전환이 적용 된 후에 회사가 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전환 후 계약” 은 무효로 하며, “전환 전 계약” 이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 위 사항으로 “전환 전 계약” 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증액보험료의 추가납입 및 정산차액의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증액보험료의 추가납입 및 정산차액의 반환 등이 연체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해당 금액을 보험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 이 청약서에서 ‘최근 ○개월 이내(◆년 이내)’ 는 청약일의 ○개월 전일(◆년 전일)부터 청약일 까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일이 4월 1일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는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현재 및 과거의 질병

1. 최초 계약 체결 이후 3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 포함)
 2. 최초 계약 체결 이후 3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아래의 질병으로 “진단” 받거나 “ 입원 또는 수술” 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1) 암 2) 협심증 3) 심근경색 4) 뇌졸중증
 - 5) 간경화증 6) 심장판막증 7) 투석중인 만성신장질환
- ※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 혈액종양이 포함됩니다.

보험설계사는 계약전환 시 알릴의무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으므로 과거의 진단 또는 치료사실 등 중요한 내용을 구두로만 알릴 경우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전환 후 계약” 이 무효되며 해당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증액보험료의 추가납입 및 정산차액의 반환 등이 연체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차감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_____은(는) 보험설계사 _____(으)로부터 계약전환 시 알릴의무 위반시의 효과(전환후 계약의 무효, 증액보험료의 추가납입 및 정산차액의 반환, 연체시 보험금의 차감)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계약전환 시 알릴의무 사항에 대해 신청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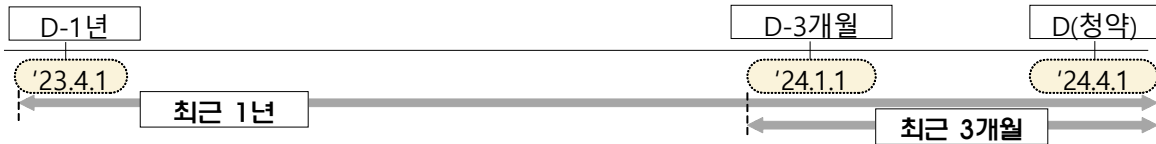
계약자 성명 : (인/서명)

피보험자 성명 : (인/서명)

[별첨2-4]

계약전환 시 알릴 의무 사항

- ※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계약자의 전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가 전환요건을 확인하고 심사 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아래 질문들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직접 작성하기 바랍니다.
- ※ 만약 아래 질문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전환이 거절될 수 있으며, 추후 계약전환이 적용 된 후에 회사가 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전환 후 계약” 은 무효로 하며, “전환 전 계약” 이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 위 사항으로 “전환 전 계약” 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증액보험료의 추가납입 및 정산차액의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증액보험료의 추가납입 및 정산차액의 반환 등이 연체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해당 금액을 보험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 이 청약서에서 ‘최근 ○개월 이내(◆년 이내)’ 는 청약일의 ○개월 전일(◆년 전일)부터 청약일 까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일이 4월 1일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는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현재 및 과거의 질병

1. 최초 계약 체결 이후 4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 포함)
 2. 최초 계약 체결 이후 4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아래의 질병으로 “진단” 받거나 “ 입원 또는 수술” 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1) 암 2) 협심증 3) 심근경색 4) 뇌졸중증
 - 5) 간경화증 6) 심장판막증 7) 투석중인 만성신장질환
- ※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 혈액종양이 포함됩니다.

보험설계사는 계약전환 시 알릴의무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으므로 과거의 진단 또는 치료사실 등 중요한 내용을 구두로만 알릴 경우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전환 후 계약” 이 무효되며 해당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증액보험료의 추가납입 및 정산차액의 반환 등이 연체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차감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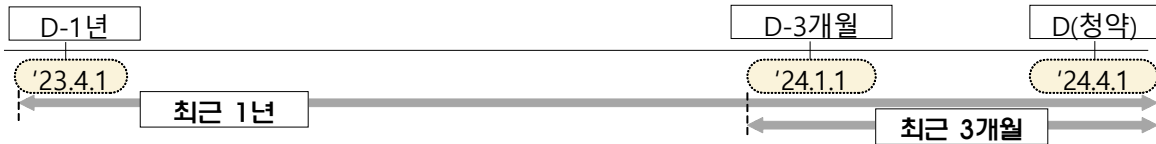
보험계약자 _____은(는) 보험설계사 _____(으)로부터 계약전환 시 알릴의무 위반시의 효과(전환후 계약의 무효, 증액보험료의 추가납입 및 정산차액의 반환, 연체시 보험금의 차감)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계약전환 시 알릴의무 사항에 대해 신청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귀중
 계약자 성명 : (인/서명)
 피보험자 성명 : (인/서명)

[별첨2-5]

계약전환 시 알릴 의무 사항

- ※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계약자의 전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가 전환요건을 확인하고 심사 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아래 질문들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직접 작성하기 바랍니다.
- ※ 만약 아래 질문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전환이 거절될 수 있으며, 추후 계약전환이 적용 된 후에 회사가 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전환 후 계약” 은 무효로 하며, “전환 전 계약” 이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 위 사항으로 “전환 전 계약” 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증액보험료의 추가납입 및 정산차액의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증액보험료의 추가납입 및 정산차액의 반환 등이 연체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해당 금액을 보험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 이 청약서에서 ‘최근 ○개월 이내(◆년 이내)’ 는 청약일의 ○개월 전일(◆년 전일)부터 청약일 까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일이 4월 1일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는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현재 및 과거의 질병

1. 최초 계약 체결 이후 5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 포함)
 2. 최초 계약 체결 이후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아래의 질병으로 “진단” 받거나 “ 입원 또는 수술” 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1) 암 2) 협심증 3) 심근경색 4) 뇌졸중증
 - 5) 간경화증 6) 심장판막증 7) 투석중인 만성신장질환
- ※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 혈액종양이 포함됩니다.

보험설계사는 계약전환 시 알릴의무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으므로 과거의 진단 또는 치료사실 등 중요한 내용을 구두로만 알릴 경우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전환 후 계약” 이 무효되며 해당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증액보험료의 추가납입 및 정산차액의 반환 등이 연체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차감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_____은(는) 보험설계사 _____(으)로부터 계약전환 시 알릴의무 위반시의 효과(전환후 계약의 무효, 증액보험료의 추가납입 및 정산차액의 반환, 연체시 보험금의 차감)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계약전환 시 알릴의무 사항에 대해 신청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귀중

계약자 성명 : (인/서명)

피보험자 성명 : (인/서명)